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5월 30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5월 31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6월 10일

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유 영 명

나. 제안이유

- 재난안전분야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병행하여 직종·직급별 정원 소요를 반영하고
-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해 '13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공무원 정원 증원 범위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 정원채정기준을 조정코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: 1,591명 → 1,607명(+16명)
- 직종별·직급별 정원조정
 - 일반직 : 1,297명 → 1,315명(+18명)
 - 5급 : 77명 → 79명(+2명)
 - 6급이하 : 1,209명 → 1,225명(+16명)
 - 기능직 : 244명 → 243명(△1명)
 - 별정직 : 13명 → 12명(△1명)

○ 정원책정기준 조정

구 분	일반직						기능직			
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6급	7급	8급	9급
현 행	1% 이내	7% 이내	27% 이내	31% 이내	25% 이내	9% 이상	5% 이내	15% 이내	21% 이내	59% 이상
개 정	1% 이내	7% 이내	27% 이내	31% 이내	26% 이내	8% 이상	7% 이내	25% 이내	30% 이내	38% 이상
조 정					+1%	△1%	+2%	+10%	+9%	△21%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, 제29조 및 제30조

○ 예산조치 : 1회추경 반영 예정, 총액인건비 범위내 운영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녹색정책담당관실과 합의.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대 회

○ 본 조례안은

- 재난안전분야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병행하여 직종·직렬·직급별 정원 소요를 반영하고,
-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해 '13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공무원 정원 증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 정원책정기준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,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정원의 총수는 1,591명에서 1,607명으로 16명이 증원되고
- 직종별·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
일반직은 1,297명에서 1,315명으로 18명으로 증원하고,
기능직은 244명에서 243명으로 1명이 감축되며,

- 별정직은 13명에서 12명으로 1명 감축 하여,
-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근거규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재난안전분야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병행하여 직종·직렬·직급별
정원 소요를 반영하고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
등에 관한 규정」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최소인력을 증원하고,
인력을 적절하게 조정 배치함으로써 시정을 보다 생산적이고,
능률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,
인력조정 및 정원책정 기준 조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